

산업기술 유출 신고 포상금 관련 법률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6476호, 2019.8.20., 일부개정]	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30419호, 2020.2.18., 일부개정]	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1, 2020.2.21., 일부개정]
<p>제21조(산업기술보호포상 및 보호 등)</p> <p>①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1. 30.></p> <p>②정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정착 및 국적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·포상금 지급, 신변보호 등의 기준·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26조(산업기술보호 포상) ①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포상과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자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.</p> <p>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1억원 이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</p>	<p>제6조(포상금의 지급기준 등) ①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.</p> <p>②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(先後) 및 구체성,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. 다만,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.</p>

포상금의 지급기준(제6조제1항 관련)

포상금 지급대상	포상금액
1. 법 제14조 각 호(제4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해당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를 신고한 경우	1억원 이하
2. 법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해당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를 신고한 경우	3천만원 이하